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안

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391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고성미 의원

도병두 의원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의 개정(법률 19241호, 2023. 3. 21. 공포, 2023. 9. 22. 시행)으로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9. 6. ~ 2023. 9. 12.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3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 1명씩 둘 수 있다.

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·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

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) ①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지원
2.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
3.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
4.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 및 인력 등의 지원

②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

대표의원 인영부

성명		직인	사인
한글			
한문			

소속의원 연서·날인명부

연번	소속정당	의원성명	서명	인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변경 보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」 제3조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변경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
※ “구분” 란에는 교섭단체의 “명칭변경” 또는 “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

대표의원 인영부

성 명		직 인	사 인
한 글			
한 문			

소속의원 연서·날인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인

※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“서명” 란은 불요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(정당변경)보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」 제3조 제5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(정당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이동보고

대 상 의 원		이 동 사 항			비 고
소속정당	성 명	일 자	내 용	사 유	

※ 이동사항중 “내용” 란에는 “교섭단체 탈퇴”, “신규가입” 등을 기재

정당변경 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경 일 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보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·운영 조례」 제3조 제6항에 따라 당적취득(소속정당 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당적 취득보고

의원성명	당적 취득사항		비 고
	취득한 정당명	취 득 일 자	

소속정당 변경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(인)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

관계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63조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